예 산 총 칙

2016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034,963,888	211,048,917
일반회계	6,074,172,069	182,225,162
특별회계	960,791,819	28,823,755
공기업특별회계	510,933,655	15,328,010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510,933,655	15,328,010
기타특별회계	449,858,164	13,495,745
물이용부담금수질개선	238,689	7,161
의료급여기금사업특별회계	394,253,037	11,827,591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47,890,319	1,436,710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3,329,109	99,873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특별회계	4,147,010	124,41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9,923,877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57,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